한국학 제 44권 제2호 통권 163호 121-148쪽
doi: 10.25024/ksq.44.2.202106.121

조조의(朝祖儀)의 공간 및 설행에 대한 논의와 그 의의

김동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한국사학 전공
dg-yw@hanmail.net

Ⅰ. 머리말
Ⅱ. 효종대 조조의(朝祖儀) 논의
Ⅲ. 영조대 조조의 설행 및 공간 논의
Ⅳ. 정조대 조조의 재논의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국왕의 죽음을 맞이하여 베푸는 의례인 국장은 조선시대 국가 전례의 기본 범주인 오례(五禮) 중에서 흉례(凶禮)에 해당한다. 흉례를 포함한 조선 왕실의 오례를 정리한 최초의 국가 전례서는 1451년(문종 1)에 편찬된 『세종실록오례(世宗實錄五禮)』이다. 『세종실록오례』 이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1474년(성종 5)에 편찬되면서 조선의 기본적인 국가 전례서로 자리매김 되었다. 『국조오례의』가 국가 전례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가운데 임진·병자 양 난으로 조선 사회가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국가 전례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가 예제를 정비하는 작업은 영조대에 이르러 대체적으로 완성을 보게 되었는데, 1744년(영조 20)에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1751년(영조 27)에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를 편찬하였다. 이는 당시 변화된 국가 제도와 시의를 반영하고 『국조오례의』 기록에 누락되었던 여러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1]

이와 같이 영조는 여러 국가 전례서를 편찬했을 뿐 아니라 흉례만을 위한 별도의 전례서인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효순 현빈(孝順賢嬪, 1751), 의소세손(懿昭世孫, 1752)의 상을 치르면서 1752년(영조 28)에 1차 완성되었다가, 다시 정성왕후(貞聖王后, 1757)·인원왕후(仁元王后, 1757)의 상을 치르면서 보완되어 1758년(영조 34)에 간행되는데,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와 새로 보완된 내용이 모두 합편된 형태이다. 물론 영조 이후에도 국휼에 대한 개보(改補) 논의와 추가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논의를 결집시켜 공적인 편찬에 이른 수준으로

1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글항아리, 2015), 22-23쪽.

보면, 1758년 간행된 『국조상례보편』은 조선시대 흉례 영역과 관련하여 정비한 전례서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다.[2]

이후 정조대에는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과 『춘관통고(春官通考)』가 완성되었다. 이 가운데 『춘관통고』는 '통고(通考)'의 형식과 오례의주를 종합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기존 오례서의 의주(儀註) 중심의 서술태도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실을 포함한 통합적 오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조오례의』부터 『속오례의』 등에 기록된 오례의 내용을 각각 원의(原儀), 속의(續儀), 금의(今儀)로 구분, 표기함으로써 의례의 각 시기별 변화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오례서의 기록태도가 한층 진전된 모습을 지니는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3] 그런데 『춘관통고』 편찬의 토대를 제공한 『국조오례통편』과 이전 전례서들을 비교한 연구[4]를 통해 보면 길례·가례·군례 영역에서는 추가된 의례가 있지만 빈례·흉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빈례는 대외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조선후기의 상황이 반영된 것인데 비해 흉례는 영조대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을 그대로 전범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조상례보편』은 조선 후기 국장의 전범으로 파악할 만한 중요한 흉례서이다. 이미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보』에서 당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흉례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이후 수차례의 국상이 발생하자 기존의 의례와는 다른 변례(變禮)를 보완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흉례서가 필요하다는 영조의 인식이 『국조상례보편』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상례와 관련하여 완성본으로 인정할 만한, 완성도 높은 흉례서가

---

2 이봉규, 「喪禮 爭點을 통해 본 『國朝喪禮補編』의 志向」: 『古今喪禮異同議』와 『國朝喪禮補編』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6(2011), 92쪽.

3 송지원, 「국왕 영조의 국장 절차와 『국조상례보편』」, 『조선시대사학보』 51(2009), 173쪽.

4 김문식, 「『국조오례통편』의 자료적 특징」, 『한국문화연구』 12(2007), 75-78쪽.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영조대의 『국조상례보편』의 편찬과 관련하여 조선 후기 국가 전례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5] 이들 연구는 조선 후기 흉례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편찬배경과 체제 및 내용, 그리고 영조의 국장을 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당나라 이후 명나라에서 『대명집례(大明集禮)』가 편찬될 때까지 황실의 국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의 오례 가운데 흉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조오례의』가 『개원례(開元禮)』를 본떠서 편찬되었지만 국휼제도가 누락되어 있어 두우(杜佑)가 편찬한 『통전(通典)』을 따랐다고 하였다.[6] 『통전』과 『주자가례』와의 상관성은 특히 흉례와 관련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데[7], 문제는 『주자가례』가 왕조례(王朝禮)가 아닌 사례(士禮) 중심의 예서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제후에 해당하는 조선의 국왕에게 맞지 않는 절차들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의절들이 있었다. 그와 관련된 각각의 사례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국조상례보편』 단계에서는 전에 없던 2가지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하나는 '복후전(復後奠)'이고 다른 하나는 '조조의(朝祖儀)'이다. 복(復) 이후의 전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의례(儀禮)』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어느 순간 누락이 되어 있었다. 습(襲) 이후의 전만 남아 있어서 복 이후에도 전을 행하는 것으로 의주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별다른 이론(異論)

---

5 김진영, 「英祖代 『國朝喪禮補編』의 편찬과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1)(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송지원, 「국왕 영조의 국장 절차와 『국조상례보편』」, 『조선시대사학보』 51(2009); 이현진, 「영조대 왕실 상장례의 정비와 『국조상례보편』」, 『한국사상사학』 37 (2011).

6 『中宗實錄』, 권38, 중종 15년 3월 6일.

7 이현진, 『조선 왕실의 상장례』(신구문화사, 2017), 35쪽.

없이 이후에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조조의와 관련된 의절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의주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행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었고, 이는 정조대까지 이어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조의를 둘러싼 논의와 시행과정 및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조조의 시행 논의와 관련한 연구가 있다.[8] 당대 조조의 논의와 관련하여 연대기 자료인 실록을 통해 검토하였는데, 이로 인해 조조의 의절이 상장례에서 갖는 의미 및 논의 전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또한 규장각 소장 『국장도감의궤』, 『빈전혼전도감의궤』의 의절을 살펴 영조대 논의 과정 이후에 조조의가 실제 설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검토대상이었던 연대기자료 외에 의궤 및 등록 자료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과정을 살피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조선 후기, 특히 영·정조대의 흉례와 관련한 왕조례의 이해 수준 및 왕대별 예학의 특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먼저 조조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효종대 김집(金集)이 『고금상례이동』에서 조조의의 설행에 관해 논의를 한 것과 이에 대한 이경석(李景奭)의 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집은 고례의 전거들을 활용하여 『국조오례의』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조조의의 설행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경석은 고례와 현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조조의를 설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결국에는 이경석의 의도대로 되었다.

Ⅲ장에서는 효종대 논의의 연장선으로 진행된 영조대 조조의의 설행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숙종대 이후 '주자예학'의 권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자예학'을 사례(士禮)로 인식하고 그것과 구별된 존왕적

8 박례경, 「조선시대 國葬에서 朝祖儀 설행 논의와 결과」, 『규장각』 31(2007).

예학을 주창한 영조의 예학을 고찰해보겠다. 특히 '유진무퇴(有進無退)', '즉원유점(卽遠有漸)'이라는 대원칙과 조전(祖奠)의 장소 등 논의의 중점 사안들이 모두 공간 및 공간 이동과 관련이 있기에 연결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조조의가 『상례보편』에 등재되었음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정조대의 논의과정을 살펴보겠다. 이로 인해 앞선 영조대의 존왕적 예학에 대한 반성으로 주자예학을 강화해 나갔던 정조대의 예학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효종대 조조의(朝祖儀) 논의

오례의 흉례 절차는 공간·시간·의식 목적에 의하여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염습의례(殮襲儀禮), 빈전의례(殯殿儀禮), 발인의례(發靷儀禮), 혼전의례(魂殿儀禮)로써, 염습의례는 고명(顧命) 이후 5일간에 걸쳐 시신에 직접 의식을 행하는 염습을 기본으로 하여 그 전후에 필요한 의식과 제구를 마련하는 항목이다. 빈전의례는 5일째 빈전을 마련하고 5개월 동안 찬궁 앞과 빈전 내외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발인의례는 발인을 중심으로 하여 찬궁을 열어 재궁을 옮기는 순간부터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산릉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즉 궁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을 말한다. 혼전의례는 산릉에서 다시 궁궐로 돌아와 혼전을 만들고 3년상을 지내는 동안 이루어지는 의식이다.[9]

9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硏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4-76쪽.

이 가운데 발인의례는 계빈의(啟殯儀), 조전의(祖奠儀), 견전의(遣奠儀), 발인반차(發靷班次), 발인의(發靷儀), 노제의(路祭儀), 천전의(遷奠儀), 입주전의(立主奠儀), 반우반차(返虞班次), 반우의(反虞儀), 안릉전의(安陵奠儀), 산릉조석상식의(山陵朝夕上食儀) 등 12개 항목으로 진행된다.[10] 특히 반우하기 전까지의 단계인 계빈의에서 입주전의까지는 시신이 자신의 집을 나서서 장지로 길을 떠나 매장되는 과정으로서 상장례의 상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의례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빈소를 열고 관을 꺼내는 계빈의를 거치면 길을 떠나기에 앞서 전(奠)을 올리는 조전의를 행한다. 다음날 발인 직전에는 문 앞에서 전을 올리는 견전의를 행하고 그 다음 발인의 행렬을 갖추어 장지로 향해가는 발인의를 거행한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길에서 노제의를 행하고 장지에 도착하여 매장하기 위해 영구를 옮길 때 천전의를 지낸다. 매장 후에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비단으로 만든 신백(神帛) 대신에 새로 우주를 만들어 전을 올리는 입주전의를 거행함으로써 주요 장례 절차는 일단락된다. 국장의 엄숙함과 성대함을 내외에 현시하는 것이 바로 발인의 반차 행렬이기 때문에 재궁이 빈소를 나와 장지로 가는 이 단계가 국장의례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빈의와 조전의 사이에 있어야 할 조조의 의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조의는 빈소의 찬궁(欑宮)을 열고 재궁을 꺼내는 계빈의를 거행한 뒤에 재궁이 종묘(宗廟)에 가서 조상을 알현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는 의례이고, 조전의는 발인 전날 저녁에 올리는 전이다. 조조의를 통해 조상을 뵙고 알사(謁辭)를 마친 시신이 날이 밝기를 기다려 발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죽은 이가 생전에 거처하던 집을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삶을

10 『國朝五禮儀』 卷7, 「凶禮」.

마치고 장지로 떠나가는 큰 변화를 조상에게 고하고 하직하는 과정이므로 유교적 상장례의 전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담은 의례 절차라고 하겠다.

그런데 그 의절의 상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국장에서 조조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조선 전기의 국가전례서에 등재되지 않았다. 세종대에 편찬된 오례의 '흉례의식(凶禮儀式)'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이어서 1474년에 간행된 『국조오례의』 흉례에서도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들 전례서에 따르면 국가의 상장례는 계빈의 이후 조조의 없이 조전의를 올리고 발인하는 날에 견전의를 거쳐 발인을 시작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조선 전기 국가전례서에 조조의와 관련된 의주가 없는 것에 대해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이는 뒤에 살펴보게 될 조조의의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논의과정에 참여한 조정 대신들은 『국조오례의』에 조조의가 없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조조의가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아 고의로 누락시켰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 『국조오례의』 편찬과정에서 조조의의 등재 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현재까지 남아 있지 않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조오례의』 편찬과정에서 『개원례』를 참조하였는데 그 책에는 상례 관련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되는 흉례 의식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조조의를 시행할 것을 언급한 사람은 김집(金集)으로, 그는 인조의 상에 대한 효종의 자문에 응답하여 『고금상례이동(古今喪禮異同)』을 지어 올렸다. 그는 각 조항마다 먼저 『의례(儀禮)』, 『예기(禮記)』 등 예경(禮經)에 실린 고례(古禮)와 가례(家禮) 등을 위주로 하고, 다음에 『국조오례의』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언급한 뒤에 자신의 의견을 붙여 정정(訂正)하거나 다른 예서(禮書)를 상고해 선택해서 보충하기도 하였다.[11] 그는 「진조조전(陳朝祖奠)」 조(條)에서 조조

11 『孝宗實錄』 권1, 효종 즉위년 6월 24일. 이 내용은 『增補文獻備考』 권68, 「禮考」

의를 국제(國制)로서 설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례인 『예기』를 근거로 하여 조조의란 죽은 자가 자신의 집을 떠나는 슬픈 마음에 조상이 계시는 종묘에 가서 뵙는 것이고, 조조의를 행하는 것은 망자의 그 효심을 헤아려서 거행하는 것[12]이라고 예의(禮意)를 밝혔다. 그리고 그러한 예의를 담고 있는 의례인만큼 조조의는 상장례의 큰 절목이라고 평가하고 마땅히 강론을 거쳐서 제도로서 설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조전(祖奠)」 조(條)에서 현재 조조의 없이 이루어지는 조전의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조조의가 없음으로 해서 조전의가 종묘의 뜰이 아닌 빈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장례의 근본적인 예의(禮意)를 위배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계빈에서 발인에 이르는 과정은 『예기』의 '즉원유점(卽遠有漸)'과 '유진무퇴(有進無退)'의 예의를 구현하는 과정인데, 현행 국제에서는 종묘에서 행해야 할 조조의가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조의를 거행한 뒤에 종묘 뜰에서 거행해야 할 조전의 역시 종묘보다 이전 공간인 빈전으로 옮겨져 거행되고 있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례에서의 계빈-발인의 공간 이동〉

의절	계빈 →	조조 →	조전 →	견전 →	발인
장소	빈전 →	종묘 →	종묘 뜰 →	종묘 문앞	

〈『국조오례의』에서의 계빈-발인의 공간 이동〉

의절	계빈 →	(조조)	조전 →	견전 →	발인
장소	빈전 →	(없음)	빈전 뜰 →	외전 문앞	

15 〈國恤〉 4 葬制에도 보인다.

12 『禮記』, 「檀弓下」. "喪之朝也, 順死者之孝心也. 其哀離其室也. 故至於祖考之廟而后行."

김집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본격적인 의론에 부쳐져, 좌의정이던 이경석(李景奭)의 헌의로 이어진다. 이경석은 김집이 제시한 고례(古禮), 즉『의례』의 내용을 자세히 상고하여 고례를 그대로 재현하여 행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이유를 밝힘으로써, 현행『국조오례의』가 조조의를 빼놓고 조전의만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당시에는 이미 궁궐과 종묘가 분리되어, 계빈, 조조, 조전, 발인의 과정이 모두 종묘에서 거행되던 고대와는 의례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묘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각각의 의례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면서 공간적으로도 차례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빈전에서 나온 재궁이 종묘에서 조조의를 행한 다음에 그곳에서 밤을 지샐 수 없고 다시 빈전으로 돌아와 다음날 발인을 해야 하는 현실은 '즉원유점'과 '유진무퇴'를 상징하는 의례의 공간 이동을 어기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거행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국조오례의』에서 조조의에 관한 절목을 세우지 못하고 누락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다.[13]

김집의 정확한 고례 이해에 근거한 문제 제기로 시작되었던 조조의 설행 논의는 이경석 외 김상헌(金尙憲), 정태화(鄭太和) 등의『국조오례의』를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국조오례의』에서 조조의가 제외되어야 했던 현실적인 제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Ⅲ. 영조대 조조의 설행 및 공간 논의

효종대 김집이 고례대로 설행할 것을 주장했던 조조의 의절에는 현실과

13 『孝宗實錄』 권1, 효종 즉위년 6월 24일.

맞지 않는 구애되는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는 고대의 태묘와 조선의 종묘가 공간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즉원유점'과 '유진무퇴'의 원칙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기(禮記)』 단궁(檀弓) 상(上)에 "창 밑에서 반함(飯含)을 하고, 호(戶) 안에서 소렴(小斂)을 하고, 조계(阼階)에서 대렴(大斂)을 하고, 객위(客位)에서 빈(殯)을 하고, 정(庭)에서 조전(祖奠)을 진설하고, 묘(墓)에서 매장하는 것은 점차 멀리 떠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사(喪事)에 나아감은 있으나 물러남은 없다."[14]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계빈에서 발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영조대에 행해진 조조의 논의는 이전 효종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영조는 노론의 '주자예학'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신례(新禮)들을 창설하였는데, 이는 국제(國制)를 기준으로 했던 부왕 숙종의 예학 인식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었다.[15] 영조대 논의는 효종대보다 진전된 것으로 『대명회전』의 내용을 전거로 삼았다. 이미 중국에서도 고례대로 조조의를 진행하는데 현실적으로 구애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옛 태묘의 제도와 다른 점 때문인데, 고례에는 태묘 안에 빈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당시에는 태묘가 궁궐 밖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대명회전』에는 고례의 조조의를 실행할 방법으로 공간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궁이 아닌 신백으로 조조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 명에서는 신백으로 조조의를 행하기도 하였다.[16] 비록 고례를 그대로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례를 적용해 조조의를 설행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이에 영조는 다음과 같이 조조의의 절충적 시행을 대신과 유신에게 하문하게 된다.

---

14 『禮記』「檀弓」 上. "飯於牖下, 小斂於戶內, 大斂於阼, 殯於客位, 祖於庭, 葬於墓, 所以卽遠也, 故喪事有進而無退."

15 정경희, 「영조의 예학」, 『규장각』 제25집(2002), 205쪽.

16 『英祖實錄』 권90, 영조 33년 10월 10일.

삼년상의 제도가 이미 복고되어 범절이 크게 갖추어져 있으나, 그 중에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오직 부제(祔祭)와 조조(朝祖) 두 절목 뿐이다. 태묘의 제도가 이미 고제(古制)와 차이가 있으니 부제한 절목은 지금 의론할 수 없거니와, 조조의 경우에는 참으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은 곧 재궁을 받들고 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고제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묵묵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대명회전』을 보니 이미 조조의 의식이 있었는데, 단지 신백을 받들어 조상께 하직하는 예를 행하니, 은연중에 구경산(丘瓊山)의 『의절(儀節)』과 합치되었다. 『회전』을 따라 이 예를 모방하여 의절을 정하고 『보편』에 수록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다. 다만 의절은 막중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대신과 유신에게 문의한 뒤에 편집청 당상과 더불어 등대하여 아뢰게 하라.[17]

영조가 제안한 것은 재궁은 빈전에 그대로 두고, 신백만이 재궁을 대신하여 종묘에 알사(謁辭)하는 방식으로 조조의를 거행하는 것이다. 신백은 죽은 이의 혼(魂)이 의지하는 것으로서, 장례 후에 정식으로 종묘에 안치될 신주(神主)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흰 비단으로써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다. 재궁은 본래 자리에 두고 망자의 혼이 의지하고 있는 신백만을 종묘에 옮겨 알사를 한다면, '유진무퇴'라는 고례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상에게 삶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중요한 의례 절차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절충안인 셈이다.

그러나 수의(收議)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영조의 의견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 영중추부사 김재로(金在魯)는 신백으로 재궁을 대신하는

17 『仁元王后國恤謄錄』(K2-3000) 祔祭, 朝祖, 問議傳敎. "三年之制旣復, 凡節大備, 而其不備者, 唯祔祭朝祖二節而已. 太廟之制, 旣與古制有異, 祔祭一節, 今不可議. 而至於朝祖, 禮固當也, 而其難者, 卽奉梓宮, 而古制無可據, 故泯默矣. 今覽大明會典, 已有朝祖之儀, 祗奉神帛, 行辭祖之禮, 暗合於丘瓊山儀節, 遵會典倣此禮, 定儀節錄補編, 似不可已. 而儀節莫重, 令禮官問于大臣儒臣後, 與編輯廳堂上, 登對以稟."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 대개 사람이 죽게 되면 혼백(魂魄)이 길을 달리합니다. 백(魄)은 곧 체백(體魄)으로서,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혼(魂)은 처음에는 혼백(魂帛)으로, 나중에는 목(木[神主])로 실당(室堂)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백(帛)으로 조조하고 구(柩)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자는 잠시 나가서 하직하고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는 자는 빼먹고 하직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선배 예가(禮家)에서는 간혹 백(帛)으로 대신하는 제도를 쓰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씨(丘氏)의 본설(本說)에도 또 한 '옥우(屋宇)가 널찍한 경우에는 의당 예법(禮法)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니, 지금 당당한 국가가 이미 '폐해진 것을 되살리고 옛것을 회복시킨다.'고 하면서, 마침내 이렇게 구간(苟簡)하여 정당하지 못한 예를 행한다면, 어찌 듣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18]

신백은 매장 후에 태워버리지만, 신백에 실려 있던 망자의 혼(魂)은 매장 후부터 신주로 사용할 우주에 다시 실려서 돌아와 안치된다. 따라서 김재로가 영원히 죽음의 세계로 돌아갈 체백(體魄), 즉 시신은 하직 인사를 하지 않고, 다시 종묘로 돌아올 혼(魂)이 실린 신백만이 종묘에 가서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 영조가 신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재궁의 일을 대신하여 가는 것이라고 변론하였으나, 영조 역시 조선의 궁묘 현실에 맞춘 조조의가 그 의절에 있어 순편하지 못하고 어그러짐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19]

---

18 『仁元王后國恤謄錄』(K2-3000) 收議. "…… 盖人之死, 魂魄殊途, 魄是體魄, 而永歸于土者也, 魂則始以帛, 終以木, 返于室堂者也. 若朝祖以帛而不以柩, 則是終返者以暫出辭, 而永歸者, 闕然不辭也. 是故先輩禮家或有不用代帛之制者, 而丘氏本說, 亦有屋宇寬大者, 自宜如禮之語. 今以堂堂國家, 旣曰擧廢復古, 而乃爲此苟簡不正當之禮, 則豈足於聽聞哉……"

19 『國朝喪禮補編』 卷5, 「受敎分類」 下, 朝祖.

한편 영조의 절충안은 좌의정이던 김상로(金尙魯)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는 발인 하루 전에 재궁을 모시고 외전(外殿)에 나아가고, 이어서 신백을 앞서 출발시켜 태묘에서 조조를 행하게 하고 돌아와 조전을 행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영조는 김상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예조로 하여금 구체적인 의절들을 의논하고 정하여서 『상례보편』에 싣도록 명하였다. 영조가 조선시대 상장례에서 결여되었던 조조의 의주를 마련하고 그 설행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무엇보다 상장례에서 조조의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지만, 실무적으로 의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실질적인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대명회전』과 구준(丘濬)의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이다. 그 밖에 영조가 조조의의 시행을 결단한 또 하나의 근거는 고례(古禮)에 담겨 있는 예의(禮意)였다.

> 예(禮)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았겠는가? 그 근본은 바로 인정(人情)인 것이다. 이미 인정에 화합되면 예절에도 합당한 것이니,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는가? 아! 경자년 이후에 상제(喪制)를 복고(復古)하여 한(漢)·당(唐) 시대의 비루함을 모두 씻어 버리고 금년에 이르러서야 『상례보편』이 장차 완성될 단계인데, 아직도 빠진 예가 있으니, 바로 부제(祔祭)와 조조(朝祖) 두 가지 일이다. 부제는 묘제(廟制)가 옛날과 달라서 구애됨이 있으므로 행하기 어렵고, 조조의 경우에는 이미 『대명회전』에 실려 있고 또한 구준(丘濬)의 『의절(儀節)』에도 있으므로, 여러 대신들과 재외 유신에게 물어 본 것이다. 신백(神帛)이 조조하는 것은 곧 문황제(文皇帝)의 대휼(大恤) 때에 이미 행한 예이고 구씨(丘氏)가 창론한 것이 아니다. 비록 신백을 받들고 행례를 하더라도 재궁은 빈전(殯殿)에 있으니 역시 나아갔다가 물러갔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영부사의 의논에 '영귀(永歸)할 체백(體魄)으로 하직 인사를 하지 않고 반실(返室)할 혼백(魂帛)으로만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持難)의 단서가 된다.'고 하였으나, 신백이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재궁의 일을 대신하여 행한 것이니

혐의할 필요가 없다.

아! 부제는 비록 행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스스로 부묘(祔廟)가 될 것이고 조조는 행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에 행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의절(儀節)이 순편하지 못한 것은 곧 다음 문제이다. 여러 의견을 물으니, 비록 조금 어긋남이 있으나 정리(情理)가 이미 이와 같고 예절에도 역시 근거가 있으니, 발인(發靷) 전 1일에 재궁을 받들어 외전(外殿)으로 나아가서 신백을 받들어 조조례를 행한 뒤에 돌아와 같은 전(殿)에 안치시키고 조전(祖奠)을 행한다면 정례(情禮)에 이미 유감(遺憾)됨이 없고 또한 유진무퇴(有進無退)하는 도리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아! 하룻밤 지내고 올 때의 거둥에도 오히려 또한 먼저 가서 고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작별하는데 어찌 빠뜨릴 수가 있겠는가? 바로 예조로 하여금 의절을 상확(商確)하여 『상례보편』에 싣도록 하라.[20]

영조는 제례(制禮)는 인정(人情)에 기초한다는 고례(古禮)의 정신을 천명함으로써, 시행 상에서 야기되는 의절의 순편치 못함은 조조의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리(情理)의 근간(根幹)에 비해 작은 일로서 처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조는 유신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조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발인 하루 전날 계빈전을 마친 뒤 재궁을 받들어

---

20 『仁元王后國恤謄錄』(K2-3000) 朝祖綸音. "禮豈自天降而從地生乎? 其本卽人情也. 旣叶於情, 亦合於禮, 則其何闕哉? 噫! 庚子以後喪制復古, 一洗漢唐之陋, 至于今年補編將成, 而猶有闕禮, 卽祔祭朝祖二事也. 祔祭則廟制異古, 掣礙難行, 至於朝祖, 已載大明會典, 亦有丘濬儀節, 故問于諸大臣及在外儒臣矣. 神帛朝祖, 卽文皇帝大恤時已行之禮, 非丘氏之創論. 雖奉神帛行禮, 梓宮則在殯, 亦無進退之可言. 領府事之議以爲, '不辭永歸之體魄, 乃辭返室之魂帛, 爲持難之端.' 然神帛非辭也, 卽替行梓宮之事, 則不必爲嫌. 噫! 祔祭雖不行, 將來自當祔也, 朝祖不行, 更行於何時? 思之及此, 儀節之難便, 卽是第二件也. 下詢諸議, 雖略有參差, 而情已若此, 禮亦有據, 靷前一日, 奉梓宮詣外殿, 奉神帛行朝祖禮後, 還安同殿行祖奠, 則情禮旣無憾, 而亦不悖於有進無退之義. 噫! 經宿之幸, 猶且先告, 其於永辭, 豈可闕焉? 其令儀曹, 商確儀節, 載於補編."

외전(外殿)으로 옮기고 신백을 받들어 조조의 예를 행한 뒤 외전에 봉안하고 조전을 행하는 것이다. 이때 외전이 없을 경우에는 재궁을 한 번 들었다 내려놓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또한 조조는 종묘와 영녕전에 모두 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조조를 할 때 하실(下室)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를 익각(翼閣)으로 옮기고 조조를 행한 뒤에 다시 제자리에 봉안한다는 의절 등을 새롭게 보완하였다.[21]

〈『국조상례보편』에서의 계빈-발인의 공간 이동〉

의절	계빈 →	조조 →	조전 →	견전 →	발인
장소	빈전 → 외전	→ 종묘·영녕전	→ 외전	→ 외전 문앞	→

기본적으로 영조는 부왕인 숙종이 국제(國制)를 기준으로 했던 예학 인식과는 크게 차이점이 있었다. 즉위 초만 하더라도 노론의 주자예학에 동조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주자예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왕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예학 인식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영조는 주자예학에도 조예가 깊었지만, 주자예학의 전적인 수용과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왕실 위상 강화론은 동궤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영조는 기존의 정치적인 측면뿐 아니라 예학의 측면에서도 주자학에 구애되지 않고 왕정강화론에 입각하여 신례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22]

영조의 왕실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존왕적 예학은 복제 문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7세기 현종대 복제 예송은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단의빈과 효장세자 때의 복제 내용은 『국조속오례의』의 복제조에 반영되었다. 당시 계체를 강조하는 영조와 친속을 강조하는 노론은

21 『國朝喪禮補編』 卷2, 「朝祖儀」; 卷5, 「受敎分類」 下, 朝祖.
22 정경희, 「영조의 예학」, 『규장각』 제25집(2002).

이 문제로 대립하였고, 결국에는 영조의 의도대로 복제를 개정하여 1752년 본『국조상례보편』에 수록하였다.[23]

사대부 예와는 구별된 존왕적 예학을 주창한 영조의 입장에서는 사대부가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던 조조의의 의식 회복이야말로 고례의 회복과 왕실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기에 중요한 대절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Ⅳ. 정조대 조조의 재논의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정조 즉위년에 조조의의 시행이 다시 논의되었다. 처음부터 시행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고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국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조 판서가 의주를 검토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고[24], 시행에 앞서 길일을 정하기도 하였다.[25] 또한 예문과 전례를 참고하여 의주를 마련하고 거행할 계획임을 입계하였으며[26], 습의의 길일에 대해 왕께 상언하기도 하였다.[27]

---

23 이원택,「17세기 복제예송이 18세기 복제 예론에 미친 영향: 예론의 지역적 분립과 학파 내의 분화를 중심으로」,『국학연구』13(2008).

24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五月初二日. "一. 都監堂上入侍時禮曹判書鄭所啓, 前後國恤謄錄, 俱有內哭臨廳, 而今番則姑未承下敎, 不得擧行, 何以爲之. 又所啓, 補編中, 雖載朝祖儀, 而從前未嘗行之, 故習儀及差備官等節, 曾無節目磨鍊之事, 今番則就其儀註中, 參酌磨鍊, 擧行何如. 上曰, 依爲之."

25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五月初十日. "一. 曺單子. 各項吉日, 請謚宗廟上謚殯殿習儀, 來七月初八日, 發靷習儀初度, 同月十三日, 再度, 同月十五日, 三度, 同月十六日, 謚冊寶自都監內入, 來七月十七日辰時, 內出, 同月十八日辰時, 請謚宗廟, 同日隨時, 上謚殯殿, 同月二十日卯時, 改銘旌, 同日隨時, 啓攢宮, 七月二十五日卯時, 朝祖, 同月同日隨時."

26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五月初十日. "一. 曹啓目. 今此國恤時謚冊寶自都監內入內出, 請謚宗廟上謚殯殿, 改銘旌及朝祖時, 應行諸事, 參考禮文及前例, 磨鍊開坐爲白去乎, 依此擧行何如"

27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五月初十日. "一. 七月初八日請謚宗廟上謚殯殿朝祖

그러나 영조대에 조조의가 상장례에 정식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대의 논의 결과는 조조의 시행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조오례의』에 따라 영조의 국장을 치르는 것이었다. 조조의 시행의 보류라는 뜻밖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정조의 명에 따라 영조대에 마련된 조조의의 절충적 측면들에 대한 원론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 때문이었다.

정조는 『상례보편』에 등재된 조조의 의주가 영조의 "효심"에 입각한, "의리에 의해 일으켜 놓은 의절(儀節)"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영조대 절충안의 핵심인 혼백(魂帛)만으로 조조의를 행하는 것이 조조의 논의의 핵심인 '유진무퇴'와 망자가 몸소 조상을 뵙는다는 예의(禮意)들을 적확하게 구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28]

따라서 구차한 의절로 귀결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논의를 지시하게 된다. 이에 영의정이던 김양택(金陽澤)은 상례(喪禮)에서 조조의 절차를 처음 시행하게 됨에, 사체(事體)의 중대성에 비추어 황조(皇朝) 때에 '신백행례(神帛行禮)'는 선례를 참조해야겠지만, 조조의의 설행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29] 이에 반해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은 재궁은 발인 하루

習儀時, 領議政以下行事執事官及祭官赍, 以黑團領·烏紗帽·黑角帶, 一會于議政府, 諡冊寶內出, 朝祖行禮節次, 並以習儀爲白乎矣. 應用器具·帳幕排設等事乙良, 令各該司整齊待令, 都監檢飭爲白齊."

28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七月初九日. "…… 傳曰, 引前一日, 以魂箱行朝祖禮於太廟, 旋又還安於殯殿, 翌曉始奉梓宮, 詣山陵事, 載於丁丑纂輯喪禮補編, 卽是先大王以不匱之孝思, 寓義起之儀節也. 大抵喪事, 有進而無退, 按禮之檀弓, 負夏, 主人旣祖, 推柩而反之. 子游譏其失禮, 曾夫子多之. 戶庭之內, 推而反之, 先賢猶以失禮譏之. 況引前一日以魂箱, 出辭太廟, 還奉闕中, 其視無退之禮, 不啻徑庭. 而又況以魂箱奉辭, 大有掣礙之節, 故想已有當時之奏議, 而魂返室堂, 卽先儒之言. 今此朝祖, 不以梓宮而以魂箱, 則其視返室之義, 又不啻逕庭. 事在莫大, 禮係至重, 亦我先大王遺意, 則今不可全然廢却, 而又欲以古禮爲準, 亦古今異宜. 不特朱夫子未嘗講定於纂禮之時, 我朝先正, 亦多有欲行而未果者, 此亦不可率爾議定者也. 斟酌折衷, 必有從便之道. 其令禮官, 問議于時原任大臣及在外儒臣處, 期日不遠, 趁卽往還事, 亦爲分付……"

29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七月初九日. "…… 領 議政金陽澤以爲, 喪禮朝祖一

전에 봉안해 놓고 혼백(魂帛)만이 조조의를 행한 뒤에 빈전에 다시 봉안하는 것은 '유진무퇴'의 의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영조가 '혼백상자로 하직하는 것이 아니다. 곧 재궁으로 할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혐의스럽게 여길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던 뜻을 받들어 『상례보편』에 따라 국장을 치를 것을 주장하였다.[30]

그러나 영조대에 의정(議定)된 조조의의 설행 여부를 떠나서 그것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헤치게 된 것은 우의정이던 정존겸(鄭存謙)에서 시작되었다. 정존겸은 『상례보편』의 조조의가 황조(皇朝) 때에 신백으로 받들고 거행하던 예절을 모방한 것이면서도 시기를 발인하기 하루 전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백이 태실에서 하직하고 나오면 도로 대궐 안에 모시게 되어, '유진무퇴'라고 한 예문(禮文)의 뜻과 어그러지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정존겸은 황조의 전례에서 발인하는 날에 조조의를 거행했던 방식을 따라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가(靈駕)가 출발한 다음에 조조의 예를 거행하고 바로 발인을 진행한다면 재궁이나 신백이 다시 빈전으로 돌아밤을 지샌 뒤에 발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재궁과 신백이 모두 조조의에 참여하게 되어 고례에도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즉, 조조의와 발인의를 같은 날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결안을 제시하였다.[31]

節, 今當始行, 事體至重, 考之歷代皇朝有神帛行禮之文 而今若前期辭廟, 還安闕中, 則果不無難安之節……"

30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七月初九日. "…… 左議政金尙喆以爲, 今因朝祖禮節, 伏承下詢. 嗚呼, 此禮卽我先大王遵皇朝已行之典禮, 取先儒所撰之儀節, 垂之綸音, 載之補編者也. 今以引前一日, 以神帛辭廟, 還奉闕中, 謂非無退之義. 又以魂箱奉辭, 亦非返室之意, 反復起疑, 聖諭諄諄, 此實出於仰體先朝之遺意, 而或慮古禮之失宜也. 第念引前一日, 旣有梓宮移奉之節, 則朝祖魂箱, 雖復還奉於殯殿, 恐無違於有進無退之義. 且於綸音中有曰, 魂帛非辭也. 卽替行梓宮之事, 此不必爲嫌爲敎, 則當日先朝之意, 亦未嘗不念及於此也. 大行朝已定之禮, 皆當初行於大行朝, 卽遠之辰, 聖上所以不可全然廢閣之敎, 宣出於無違不匱之聖孝, 今雖一遵補編而行之, 恐不爲失禮之歸……"

31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七月初九日. "…… 右議政臣鄭存謙以爲, 補編所載

이에 판중추부사이던 이은(李溵)은 발인하는 날에 태묘의 앞길에다 영여를 머물러 놓고 조조의 예를 거행하고서 잇달아 출발할 것을[32], 예조 판서이던 서명선(徐命善)은 발인하는 날 태묘 앞에 영가를 멈추고서 대신을 보내어 조묘(朝廟)하는 뜻을 대신 고하게 할 것을 주장[33]하여 정존겸의 설에 부합하였다.

정존겸 등이 조조의의 시행을 발인하는 날로 조정함으로써 명례(明禮)와 일치하고 예의(禮意)에도 부합하도록 한 것은 신백만으로 조조의를 행하도록 한 절충안의 구차함을 극복한 것이었으나, 이는 다시 조조의 시행 일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셈이 되었고 결국 고례에 입각하여 조조의와 발인의를 같은 날에 시행한『대명회전』조조례의 오류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즉, 예조 참판이던 이의철(李宜哲)은 행례(行禮)의 편의를 좇아서 조조의를 발인하는 날 시행하는 것이 바른 예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34]

그러자 홍문관에서는 주자가례 註에서 '만일 단지 혼백만으로 조조의 예를 행하는 것은 또한 널을 옮겨다 조조의 예를 행하는 본뜻을 잃었으니, 마땅히 의례대로 해야 할 듯 싶다.'고 한 양복(楊復)의 주장을 근거로, 구준이『문공가례의절』에서 혼백(魂帛)으로 조조의를 거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비판함으로써 논의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또한 혼백만으로 조조의 예를

朝祖一節, 蓋倣皇朝奉神帛行之之禮, 而但碁在引前一日, 故神帛出辭太室, 還奉闕中, 與有進無退之禮意, 不啻徑庭者, 果如聖敎, 無已則有一焉. 皇朝典禮, 以神帛朝祖, 廼在發靷之日, 旣設遣奠 靈駕進發之後, 蓋旣行朝祖, 則薦車便載, 從此遂行, 卽古禮然也. 今若一遵此禮而行之, 則其於酌古通今, 不害爲折衷之道……"

32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七月初九日. "…… 行判中樞府事臣李溵以爲 […] 發靷之日, 停靈畢於太廟前路, 行朝祖之禮, 仍爲進發……"

33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七月卄日. "…… 本曹判書臣徐以爲 […] 以太廟洞口少駐靈輿, 遣大臣替告之意, 有所仰對矣……"

34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丙申七月卄日. "…… 參判臣李宜哲以爲…盖若循古禮, 則喪事卽遠, 有進無退, 無容更議. 若用明禮, 則先祖後朝, 前後失序, 引日過辭, 事又未安……"

거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원 등이 종묘에 가서 고하거나, 명정으로 조조의 예를 행하는 것 모두가 근거 있는 예법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35]

이처럼 정조대의 조조의에 대한 헌의는 『상례보편』의 조조의를 마련하는데 근거로 삼았던 『대명회전』과 『문공가례의절』에 대한 고례적 관점에서의 전면적인 비판을 통해서, 혼백 대신 재궁이 직접 조묘에 알사하는 고례의 예의를 회복하는 방식이 주장되었으며, 조선의 궁묘 현실에서 종묘가 아닌 빈소의 외전으로 잠깐 돌아와야 하는 형식에 대하여 고례와 『주자가례』를 근거로 사세의 편리함보다는 고례의 입례(立禮)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정조는 헌의에 따라 『상례보편』의 조조의 대신 『국조오례의』에 따라 상례를 시행할 것을 하교함으로써, 『상례보편』의 조조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례의 대법을 지키려던 선대의 뜻을 받들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36] 정조의 이 같은 결론은 『상례보편』의 조조의를 마련했던 영조의 의지와는 반대로 조선시대 국장에서 조조의의 대절을 빠트리는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국조오례의』에 따라 시행한다는 것은 조조의 없는 국장을 시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영조가 『상례보편』에 조조의 의식을 등재할 당시에도 노론은 기본적으로 주자예학적 기준에 입각하여 반대하여 왔지만, 영조 후반기에 영조가 노론의 "의리론"의 공조자로 등장한 사정과 관련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

35 『英宗大王國恤草目記』(K2-2988) 丙申七月廿日. "弘文館啓曰 […] 只載奉柩朝祖之禮, 而不及魂帛朝祖之節. 家禮朝祖條註, 楊氏復曰, 若但魂帛朝于祖, 亦失遷柩朝祖之本意, 恐當從儀禮. 丘氏儀節曰, 今人家狹隘, 難於遷轉, 今擬奉魂帛以代柩, 雖非大禮, 猶愈于不行. 章潢圖書編朝祖條曰, 古禮擧柩置祠堂上, 於席上北首, 主人以下哭從, 今只告于祠堂, 可也. 蓋奉柩朝祖, 固是禮之正經, 而丘氏魂帛朝祖之說, 但出於一時權宜之道, 章氏只告祠堂之言, 亦未見爲的確之論, 而至於陪銘旌入廟行禮, 則尤無可據之文……"

36 『英祖國葬都監儀軌』(奎 13581), 「都廳儀軌」, 啓辭秩, 丙申七月二十二日. "…… 朝祖一節, 依五禮儀擧行, 前期告由祝文, 更爲撰進事, 分付儀曹."

반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영조 사후 노론의 존왕적 예학 전통에 대한 비판은 심화되었다. 정조 또한 주자예학에 대한 소양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왕례 운영에 있어서 주자예학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주자예학의 기준에 어긋나는 『상례보편』의 조항은 개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하였다.[37]

조조의 외에도 1786년(정조 10) 문효세자의 상을 당하였을 당시 복제는 영조대 개정된 『국조상례보편』을 따르지 않고 주자예학을 따랐다.[38] "이처럼 어긋나고 누락된 곳을 지금 수정하는 것은 실로 계술(繼述)의 한 도리이니, 이것은 바로 임신년 본을 무인년에 산정한 성상의 뜻인 것이다."[39]라고 하였듯이, 정조는 『상례보편』을 완성된 전례서로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해 가야 할 미완의 예서로 본 것 같다.

Ⅴ. 맺음말

효종대 고례에 입각해 『국조오례의』의 미비점을 강구했던 김집에 의해 조조의 의절을 복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경석 등 중신들에 의해 시행되지 못하였다. 고대 중국의 태묘와 현실과의 차이점으로 인한 공간 이동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국조오례의』에 애초에 거론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조대에는 효종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였다. 기본

37 정경희, 「정조의 예학」, 『한국사론』 50(2004), 259쪽.

38 『正祖實錄』 권21, 정조 10년 6월 26일.

39 『正祖實錄』 권21, 정조 10년 6월 24일. "…… 似此牴牾脫漏處, 及今修潤, 實爲繼述之一道, 此壬申本之刪定於戊寅之聖意也."

적으로 인정(人情)에 기초하여 고례에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한 영조였으며 조조의의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즉원유점'과 '유진무퇴'라는 공간 이동의 원칙에 대해 신백으로 재궁을 대신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부왕인 숙종대까지만 하더라도 왕례 운영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국제를 기준으로 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영조는 존왕적 예학을 바탕으로 하여 주자예학에 구애되지 않고 예의 본의를 얻기 위해 신례의 창설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조대에는 영조대의 논의를 다시 뒤집어서 조조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조조의가 국가전례서인 『국조상례보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훗날 조조의를 시행하지 않는 전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 당시에는 주자예학에 깊은 소양을 지녔던 정조와 노론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주자예학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앞선 영조대의 존왕적 예학은 부정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국조상례보편』의 의절도 개정·보완되기에 이르렀다.[40] 이는 정조가 선왕의 사업을 계승할 때 같은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의 천명이었으며, 『국조속오례의』부터 1758년본 『국조상례보편』까지 끊임없이 개정·보완해나간 영조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정조의 예학은 왕조례에 주자예학을 대폭 절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40 정경희(2004), 위의 논문.

참고문헌

1. 1차 자료

『禮記』, 『孝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國朝喪禮補編』.

『仁元王后國恤謄錄』(K2-3000).

『英宗大王國恤草日記』(K2-2988).

2. 단행본

이욱,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애통·존숭·기억의 의례화』. 민속원, 2017.

이현진,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2015.

_____, 『조선 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017.

3. 논문

김문식, 「『국조오례통편』의 자료적 특징」. 『한국문화연구』 12, 2007, 65-106쪽.

김진영, 「英祖代 『國朝喪禮補編』의 편찬과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1),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297-311쪽.

박례경, 「조선시대 國葬에서 朝祖儀 설행 논의와 결과」. 『규장각』 31, 2007, 173-200쪽.

송지원, 「국왕 영조의 국장절차와 『국조상례보편』」. 『조선시대사학보』 51, 2009, 171-209쪽.

안희재, 『朝鮮時代 國喪儀禮 硏究: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원택, 「17세기 복제예송이 18세기 복제 예론에 미친 영향: 예론의 지역적 분립과 학파 내의 분화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3, 2008, 59-95쪽.

이봉규, 「喪禮 爭點을 통해 본 『國朝喪禮補編』의 志向」: 『古今喪禮異同議』와 『國朝喪禮補編』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6, 2011, 88-114쪽.

이현진, 「영조대 왕실 喪葬禮의 정비와 『國朝喪禮補編』」. 『한국사상사학』 37, 2011, 113-155쪽.

_____, 「정조 초 영조의 國葬 절차와 의미」. 『태동고전연구』 27, 2011, 161-211쪽.

정경희, 「영조의 예학」. 『규장각』 제25집, 2002, 201-226쪽.

_____, 「정조의 예학」. 『한국사론』 50, 2004, 215-261쪽.

안소정, 「영조대 종묘 외대문 내외 공간의 행례」. 『서울과 역사』 104, 2020, 85-130쪽.

국문초록

영조는 변화된 국가 제도와 시의(時宜)를 반영하여 예제 정비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여 1744년과 1751년 각각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를 간행하였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흉례만을 위한 별도의 전례서인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간행하였다. 이때 간행된 『국조상례보편』은 조선시대 흉례 영역과 관련하여 정비한 전례서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에 추가된 조항 가운데 조조의(朝祖儀)가 있다. 조조의란 발인(發靷)하기 전 재궁(梓宮)이 빈소를 나와 종묘(宗廟)에 가서 조상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유교식 상장례의 상징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절의 상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의 국가전례서에는 조조의 의절이 등재되지 않았고 시행된 적도 없었다.

효종 대에 김집(金集)이 왕실 흉례 의식과 관련하여 조조의 시행을 처음 언급하였는데, 효종에게 올린 『고금상례이동(古今喪禮異同)』에서 국제(國制)로서 설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 조조의 없이 이루어지는 조전의(祖奠儀)가 종묘의 뜰이 아닌 빈전에서 이루어져 상장례의 근본적인 예의, 즉 '즉원유점(卽遠有漸)'과 '유진무퇴(有進無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좌의정이던 이경석(李景奭)이 고례를 상고하여 현재의 종묘라는 공간과 고대의 종묘 공간과는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조조의를 설행하기 어렵다고 헌의하여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영조 대의 조조의 논의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영조는 노론의 '주자예학'에 구애받지 않고 국왕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예학 인식을 갖추었는데, 왕정강화론에 입각한 존왕적예학을 추구하였다. 『대명회전(大明會典)』과 구준(丘濬)의 『문공가례의절(文公家禮儀節)』을 근거로 하여 신백(神帛)으로 재궁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고, 결국 새로운 의절을 마련하여 『국조상례

보편』에 등재하였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정조 즉위년에 조조의의 시행이 다시 논의되었다. 영조 대에 조조의가 상장례에 정식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대의 논의는 조조의 시행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영조 대의 논의가 고례를 정확하게 구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조의 예학 인식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조 대에 조조의의 근거로 삼았던 『대명회전』과 『문공가례의절』에 대한 고례적 관점에서의 비판과 함께 주자예학적 입장에서 사세의 편리함 보다는 고례의 입례(立禮) 정신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정조 대의 예학은 왕조례에 주자예학을 대폭 절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투고일 2021. 3. 22.
심사일 2021. 4. 23.
게재 확정일 2021. 5. 11.
주제어(keyword) 조조의(朝祖儀, Ancestral Farewell Rite),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Supplementary Compendium on State Funerary Rites)』,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Manual of the Five State Rites)』,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Supplement to the Revised Manual of the Five State Rites』, 흉례(凶禮, Funerary Rite), 김집(金集, Kim Jip), 『고금상례이동(古今喪禮異同, Comparative Study of Ancient and Contemporary Funerary Rites)』

Abstract

The Discussion on the Venue and Performance of the Ancestral Farewell Rite and Its Significance

Kim Dong-geun

King Yeongjo (r. 1724–1776)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set out to revise the systems relating to rites (禮, ye)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ing times and other state systems. To this end, the items that had been excluded from the Manual of the Five State Rites (國朝五禮儀, Gukjo oryeui) were added in the Revised Manual of the Five State Rites (國朝續五禮儀, Gukjo sok oryeui) and Supplement on the Revised Manual of the Five State Rites (國朝續五禮儀補, Gukjosok oryeuibo), which were published in 1744 and 1751, respectively. Later, a separate liturgical book focused on funerary rites entitled the Supplementary Compendium on State Funerary Rites (國朝喪禮補編, Gukjo sangnye bopyeon) was published. The Supplementary Compendium on State Funerary Rites can be considered the final version of the revised liturgy relating to the area of funerary rites during the Joseon period.

Among the items added to the Supplementary Compendium on State Funerary Rites is the ancestral farewell rite (朝祖儀, jojoui). The ancestral farewell rite refers to when the deceased king, enshrined in his royal coffin (梓宮, jaegung), offers his final greeting to the ancestors at the royal shrine (宗廟, jongmyo) before being carried to his place of burial. It is a rite which well demonstrates the symbolism of Confucian funerary ritual. Despite the symbolism of such a ritual procedure, content relating to the ancestral farewell rite did not appear in state liturgical books of early Joseon period, nor was the rite performed.

The civil official and scholar Kim Jip (金集, 1574–1656) was the first to bring up the performance of the ancestral farewell rite in relation to the funerary rites of the royal court.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r. 1649–1659), he presented to the king the Comparative Study of Ancient and Contemporary Funerary Rites (古今喪禮異同, Gogeum sangnye idong), in which he argued for the ancestral farewell rite to be designated as a state liturgical practice and performed. He said that the ancestral libation rite (祖奠儀, jojeonui) went against the principles of the fundamental propriety of funerary ritual, such as the

principle of gradually departure (卽遠有漸, jeugwon yujeom) and the principle of advancing forward without retreat backward (有進無退, yujin mutoe), as it was performed without the ancestral farewell rite and held at the palace funerary hall (binjeon) rather than in the courtyard of the royal shrine. However, when the second state councilor Yi Gyeong-seok (李景奭, 1595-1671) reviewed the ancient rites, he suggested that the contemporary royal shrine venue differed from the ancient royal shrine venue, and, therefore, the performance of the ancestral farewell rite was difficult in practice, and thus ignored it.

The discussion about the ancestral farewell rite developed in a different manner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t the time, King Yeongjo was disinterested in the "Zhu Xi-style ritual studies (Juja yehak)" advocated by the Old Doctrine (Noron) Faction. Rather, he possessed his own understanding of ritual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narch, and pursued a monarch-centered ritual studies, which was based on the theory of strengthening the monarchy. On the basis of the Collected Regulations of the Ming Dynasty (大明會典, Da Ming huidian) and the Annotated Family Rite Ceremonies of Zhu Xi (文公家禮儀節, Wengong jiali yijie) by the Ming official Jun Qiu (丘濬, 1421-1495), King Yeongjo had a hemp spirit seat (神帛, sinbaek) assume the role of the royal coffin, thus arranging a new ceremony that was then registered in the Supplementary Compendium on State Funerary Rites.

Upon the death of King Yeongjo in 1776, the issue of the performance of the ancestral farewell rite was raised again. Even though the ancestral farewell rite had been officially incorporated into the state funerary rite during King Yeongjo's reign, the discuss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ancestral farewell rite went back to square one with his successor King Jeongjo (r. 1776-1800). The discussion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had emerged out of a perception that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precise realization of the ancient rites. However, the two kings had differing attitudes toward and understandings of ritual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Zhu Xi-style ritual studies, the use of the Collected Regulations of the Ming Dynasty and the Annotated Family Rite Ceremonies of Zhu Xi as the justification for the ancestral farewell rite was critiqued, and it was argued that the incorporation of the rite was don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rather than in the pursuit of the precise realization of the ancient rites. King Jeongjo wanted to restore the zeitgeist of the era when the ancient rites were first established, and therefore went in the direction of supplementing the royal rites with many elements of Zhu Xi-style ritual studies.